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1. 3. 1. 0시 ~ 2021. 3. 14. 24시

다. 시설별·활동별 준수사항 : 붙임

라. 처분이유

- 정부는 예방접종을 고려한 유행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거리두기 체계 전환 준비 등을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조치를 2주간 유지한다는 방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대상자		1회 위반	2회 위반	상한액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15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참고1

#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21.3.1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b>① 모임·행사</b>	
사적 모임	<p>▶ <b>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b></p> <p>* (제외)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p> <p>- <b>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b></p>
기타 모임·행사	<p>▶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p> <p>▶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p>
<b>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b>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p>▶ <b>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b></p> <p>▶ <b>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b></p> <p>▶ <b>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b></p> <p>▶ <b>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b></p> <p>▶ <b>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b></p>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p>▶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p> <p>▶ <b>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b></p> <p>▶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p>
노래연습장	<p>▶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p> <p>▶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p> <p>▶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p>
실내 스탠딩공연장	<p>▶ 음식섭취 금지</p> <p>▶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p>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p>▶ <b>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b></p> <p>▶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p> <p>▶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사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p>
파티룸	<p>▶ <b>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b></p> <p>* <b>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b></p> <p>▶ <b>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b></p>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실내체육시설 (실내겨울스포츠시설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li> </ul>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수용인원의 50%로 인원제한</u></li> <li>▶ <u>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u></li> <li>▶ <u>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u></li> <li>▶ <u>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u></li> <li>▶ <u>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u></li> <li>▶ <u>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u></li> <li>▶ <u>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u></li> </ul> <p>*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p>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u></li> </ul>
결혼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li> </ul>
장례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li> </ul>
목욕장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li> <li>▶ <u>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u></li> </ul>
영화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li> </ul>
공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li> </ul>
PC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li> </ul>
오락실·멀티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li> </ul>
독서실·스터디카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li> <li>▶ <u>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u></li> </ul>
놀이공원·워터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li> </ul>
이·미용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li> </ul>
백화점·대형마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u></li> <li>▶ <u>마스크 착용</u></li> </ul>
마트·상점 (30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스크 착용</li> <li>▶ 주기적 환기·소독</li> </ul>
<b>② 기타 다중이용시설</b>	
숙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u></li> <li>▶ <u>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u></li> <li>▶ <u>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u></li> <li>▶ <u>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u></li> </ul>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국공립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li> <li>▶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li> </ul>
사회복지이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li> </ul>
<b>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b>		
마스크 착용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위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등</li> </ul>
교통시설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스크 착용</li> </ul>
스포츠 관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 이내로 관중 입장</li> </ul>
등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밀집도 2/3 준수</li> </ul>
종교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li> <li>▶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li> <li>*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li> </ul>
직장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li> <li>*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li> <li>▶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li> <li>▶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li> </ul>

## 참고2

## 문의처 (전라북도청 처분담당자)

\* 시군에 신고접수 또는 적발사항은 해당 시군에서 처분

연번	조치분야		부서	담당자	연락처
1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보건복지부 (생활방역팀)	1339, 044-202-1721~9	
2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재난과 (사회재난대응팀)	주무관 김종수 주무관 유병재 주무관 최성철	063-280-3823 063-280-3822 063-280-3796
3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형태 음식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건강안전과 (식약안전팀)	주무관 김영옥 주무관 곽경은 주무관 김종윤	063-280-2456 063-280-2440 063-280-2446
4	요양시설	노인복지과 (노인시설안전팀)	주무관 강란희	063-280-2461	
	요양병원	보건의료과 (응급의료팀)	주무관 이권혁	063-280-4689	
	정신의료기관	보건의료과 (정신건강팀)	주무관 이세라	063-280-4690	
5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팀)	주무관 이현주	063-280-3386
6	학원, 독서실, 교습소		(주관) 전북교육청 미래인재과	주무관 이주희	063-239-3442
			(협조) 자치행정과 (행정팀)	주무관 김재구	063-280-2947
7	실내체육시설, 겨울 스포츠 시설		체육정책과 (체육시설관리팀)	주무관 송귀열 주무관 안채영	063-280-2541 063-280-2542
8	숙박시설	농어촌숙박시설 (농어촌정비법)	농촌활력과 (생생마을팀)	주무관 김영옥	063-280-4195
		숙박시설 (관광진흥법)	관광총괄과 (마이스산업팀)	주무관 조성희	063-280-2704
		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건강안전과 (위생관리팀)	주무관 권수현	063-280-4673

연번	조치분야	부서	담당자	연락처
9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일자리경제정책관 (소상공인팀)	주무관 문혜숙	063-280-3256
10	백화점·대형마트, 상점·마트(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이상)		주무관 김다정	063-280-3213
11	직업훈련기관	일자리경제정책관 (일자리취업지원팀)	주무관 황지웅	063-280-2831
12	놀이공원·워터파크(물놀이형 유원시설)	관광총괄과 (토탈관광팀)	주무관 주선희	063-280-3301
13	공연장	문화예술과 (도서관문화시설팀)	주무관 소병훈	063-280-3387
14	결혼식장	여성청소년과 (여성권익팀)	주무관 최하라	063-280-2524
15	목욕장업, 이미용업	건강안전과 (위생관리팀)	주무관 권수현	063-280-4673
16	장례식장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주무관 장경애	063-280-2513
17	관광명소	관광총괄과 (토탈관광팀)	주무관 유재준	063-280-4742
18	종교시설	문화유산과 (증무팀)	주무관 강승주	063-280-3303